

2탄

## 생활관리, 격리관리

코로나19 환자의  
건강과 안전을 위한  
재택치료를  
소개합니다!



재택치료란?

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1조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



**Q/ 환자, 보호자, 동거인은  
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이 가능한가요?**

**A** 환자, 보호자, 동거인 모두  
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 
**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은 불가능합니다.**

### 재택치료 중 기본 생활 수칙



- 외출 금지
- 항상 마스크 착용, 수시로 손씻기
- 화장실 공동사용 불가  
(자택 내 화장실 1개인 경우 사용 후 즉시 소독)
- 생활용품(식기, 물컵, 수건, 침구 등) 구분하여 사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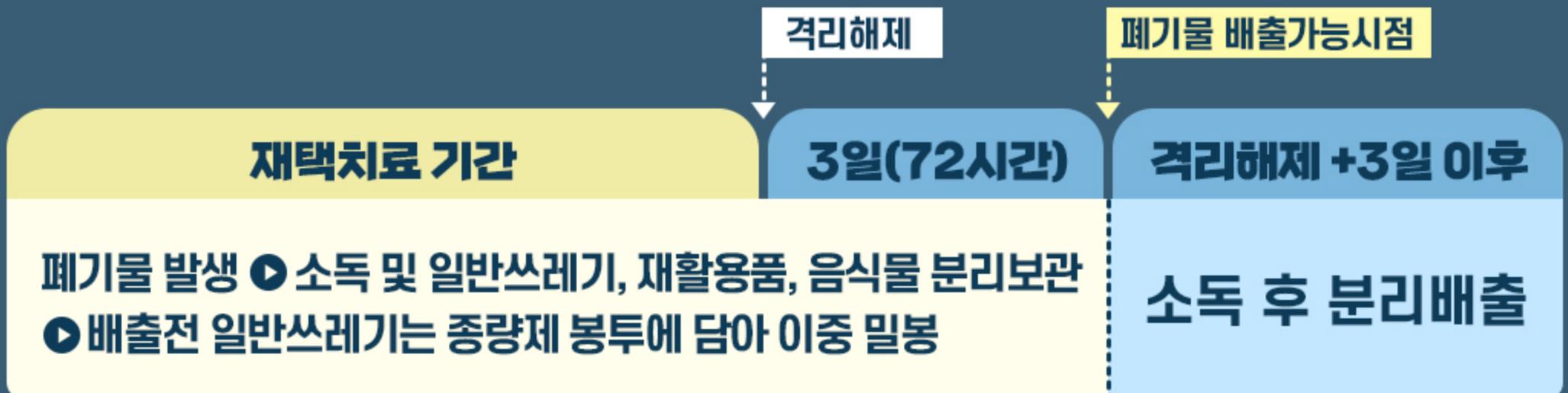
**Q /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?**

**A** 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아래 **3가지 사항을 준수**하고 **재택치료 종료 후 3일(72시간) 이후 배출**합니다.



- ▶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
- ▶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
- ▶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

\*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, 비닐봉투 지급  
\*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는 소독 후 분리배출





Q / 재택치료대상자도 **생활비 지원**을 받을 수 있나요?

A ‘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’에 따라 입원·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**유급휴가비** 또는 **생활지원비**가 지원됩니다.





Q/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A



재택치료 대상자는 **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**합니다.



재택치료 시작 시 ‘자가격리앱’을 설치하고,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, 전담공무원이 유선, 앱 등을 통해 **이탈 여부를 확인**합니다.

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 시에는 **정당한 사유\***가 없는 경우 **고발\*\***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, 거부 시 시설로 이송

\* 재난, 응급의료,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, 치매 등 고의성 없음 등

\*\* 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(감염병예방법) + 형사고발,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



**Q / 동거인, 보호자도 재택치료자 격리해제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요?**

**A 예방접종완료자와 미완료자에 대한 조치는 각각 다릅니다.**



#### 예방접종완료자

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, PCR 검사 수행  
(격리해제시, 해제 후 6~7일차)



#### 예방접종 미완료자

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 간 추가격리하여  
증상발현 등 관찰, 추가격리 중 PCR 검사(자차 등 이용) 필요

**PCR 검사**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시, 추가격리 중(필요시), 격리해제 전(9일째)

#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격리기간 예시

**확진**

날짜	1월 1일	1월 11일	1월 17일	1월 19일	1월 21일
기간		10일	16일	18일	20일
 <b>본인 62세 / 환자</b> 예방접종완료자 	10일간 재택치료	-	격리해제		
 <b>아내 59세 / 보호자</b> 미접종자	10일간 공동격리	PCR 검사	추가 10일 자가격리		
				PCR 검사	격리 해제
 <b>아들 35세 / 동거인</b> 예방접종완료자 	10일간 공동격리	PCR 검사	격리해제		
				PCR 검사	

# 코로나19,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재택치료 받으세요!



**질병관리청이**  
**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**  
**최선을 다하겠습니다.**